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906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정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과 별지 2에 각 기재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60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4. 1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원고 회사의 소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단 발주 및 검수, 대금 지급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은 2017. 5.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의 원단업체를 설립하였다. C은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원고 회사로 하여금 D에 합계 1,023,575,000원 상당의 원단을 발주하게 하여 D 명의로 그 대금을 수령한 뒤, 546,222,940원 상당의 원단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에 납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납품한 원단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액수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

다. C은 2017. 10. 10.부터 2019. 2. 26.까지 131회에 걸쳐 합계 125,547,000원을 어머니인 피고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별지 1).

라. 한편 D 명의 계좌에서는 2017. 10. 10.부터 2018. 7. 3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7,060,000원이 피고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별지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각 배임행위일에 배임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위 1의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이체 당시 성립하고 있었거나, 이체 당시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원고는, C이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체한 금전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거나 통모에 의한 변제금임을

전제로 사해행위를 주장한다.

(2) 먼저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이체 내역이 C와 피고 사이의 증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9. 3.경까지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C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받기로 하였는데, C이 사용한 카드대금의 합계 51,673,020원인 사실, ㉡ 피고는 광명시 E아파트 F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C 부부에게 위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사실, ㉢ 피고는 2008년에 태어난 C의 딸을 돌봐 주었고, C으로부터 양육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 ㉣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에는, 2017. 6. 21.경부터 2019. 4.경까지 G(C의 동생)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2,6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G은 C으로부터 부탁받은 D의 자금관리를 위해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고, C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위 돈 대부분을 D의 세금 납부나, C에게 이체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그 거래내역 전부가 증여의 성격을 가진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이체 내역이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볼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와 C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 변제를 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피고와 C, G 사이의 각 금전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와 C이 통모하여 책임재산의 부족이 초래됨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할 의사로 별지 1, 2 기재와 같은 금전 이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별지